멕시코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특별 제도 암파로(Amparo)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 인권 석사

김민주

(출처: 2019년 11월 29일 목요일자 La Jornada 기사 사진)

2019년 10월 한국 국적의 양씨는 대한민국 국정감사에 나와 멕시코에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양씨와 인터뷰를 한 JTBC 방송국 한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양모씨는 멕시코에서 동생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렀다가 멕시코 검찰에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을 했고, 올해 3월 무죄로 풀려났다는 진술을 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1] 양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멕시코의 상급법원에서 암파로(Amparo,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헌법 소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제도로 무죄를 인정받아 석방되었다고 말했

1) 출처: 2019년 10월 3일자 JTBC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8939

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씨가 말하는 암파로는 어떤 법적 절차 혹은 어떤 제도이길래 멕시코에서 중범죄로 취급하는 휴먼트래피킹(Trata de Personas)[2]의 혐의를 받으며 3년간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양씨를 석방시킨 것일까? 이 제도는 어떤 법에 바탕을 둔 사법 절차일까? 멕시코 사법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암파로는 무엇인가?

암파로는 멕시코에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사법 제도로 멕시코 합중국 헌법(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래 암파로 제도는 스페인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멕시코가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 사법제도나 절차에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멕시코에서 발달한 암파로 재판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는 재산권, 공적 자유권, 평등권, 안전에 관한 권리, 그리고 멕시코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며, 이 제도는 후에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 규정된 '효과적인 구제 조치'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3]

멕시코에서 어떻게 암파로 제도가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1836년 당시 헌법(1836년 제7의 법이라고도 한다)에서 명시한 중앙집권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카탄(Yucatán) 반도 주민들이 멕시코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될 의도를 가지고 중앙집권체제가 본인들의 주권을 약하게 하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시초였다. 1841년 3월 31일 유카탄 헌법을 바탕으로 이들은 연방 국가 내에서 자신들의 법률체제를 입법할 권리를 승인받게 된다. 동 헌법 제53조에서 처음으로 암파로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게

2) 사람을 목적으로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거래를 하는 범죄(Trafficking in person). 한국에서는 보통 '인신매매'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인신매매보다 그 취급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출처: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https://www.unodc.org/unodc/en/human-trafficking/what-is-human-trafficking.html

3) 유네스코,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효과적인 구제 조치'에 기여한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제도. 출처: 유네스코, http://heritage.unesco.or.kr/

되는데, 이 헌법을 제안한 마누엘 크레스센시오 레혼(Manuel Crescencio Rejón)은 “정부나 행정부에서 기본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야기한 피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4]라고 말했다.

이후, 의회 헌법 제정을 주도했던 마리아노 오테로(Mariano Otero)가 1847년 개정 연방헌법 제25조에서 암파로 재판을 연방 관할로 규정했고, 1857년 멕시코 합중국 연방 헌법(La Constitución Federal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1869년 1월 20일에 “암파로 재판에 대한 헌법 기본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el Juicio de Amparo)”을 제정했고 이 법률은 멕시코가 개인 권리 구제 절차를 전 세계에 공헌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7년 현 헌법인 멕시코 합중국 정치 헌법(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이후, 헌법 제103조와 제107조에 바탕을 둔 암파로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전부터 형성되어 온 암파로 제도는 조금씩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항상 현행법으로 존재해왔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

2. 암파로의 헌법적 근거, 멕시코 헌법 제103조와 제107조

암파로의 바탕은 멕시코 합중국 정치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암파로의 근본이 되는 조항은 바로 제103조와 제107조이다. 헌법 제103조는 연방 법원(Tribunales de la Federación)이 판결해야 하는 분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① 멕시코 헌법이나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 조약 및 협약에서 인정하고 보장하는 인권을 위반하는 당국의 법령, 행위, 부작위 ② 각 주(州)나 멕시코시티(수도)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취약하게

4) Amparar en el goce de sus derechos a los que pidan su protección contra las providencias del gobernador o ejecutivo reunido, cuando en ellas se hubiese infringido el Código Fundamental o las leyes, limitándose en ambos casos a reparar el agravio en la parte que procediere.

만드는 연방 당국의 법령이나 행위, ③ 그리고 연방 당국의 권한이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동급 연방 당국의 법령이나 행위를 심리하고 해결한다.[5]

현재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103조와 제107조 법령을 토대로 제정된 기본권 침해 구제 법률(Ley de Amparo,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103 y 10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제1조에서 이 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안/분쟁(이하 같음)을 해결할 목적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멕시코 합중국 헌법과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위반한 당국의 법령, 행위 혹은 부작위, ② 멕시코 합중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위반하여 각 주나 멕시코시티 주의 주권을 약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연방 당국의 법령, 행위 혹은 부작위, ③ 멕시코 합중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위반하여 연방 당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 혹은 멕시코시티 주 당국의 법령, 행위 혹은 부작위.[6] 그리고 법률은 암파로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암파로는 공권력이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개인 혹은 집단[7]을 상대로 법령, 행위 혹은 부작위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8]

---

5) Artículo 103. Los Tribunales de la Federación resolverán toda controversia que se suscite
I. Por normas generales, actos u omisiones de la autoridad que violen los derechos humanos reconocidos y las garantías otorgadas para su protección por esta Constitución, así como por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de los que el Estado Mexicano sea parte;
II. Por normas generales o actos de la autoridad federal que vulneren o restrinjan la soberanía de los Estados o la autonomía de la Ciudad de México, y
III. Por normas generales o actos de las autoridades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que invadan la esfera de competencia de la autoridad federal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6) Artículo 1. El Juicio de amparo tiene por objeto resolver toda controversia que se suscite:
I. Por normas generales, actos u omisiones de autoridad que violen los derechos reconocidos y las garantías otorgados para su protección por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así como por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de los que el Estado Mexicano sea parte;
II. Por normas generales, actos u omisiones de la autoridad federal que vulneren o restrinjan la soberanía de los Estados o la esfera de competencias del Distrito Federal, siempre y cuando se violen los derechos humanos reconocidos y las garantías otorgados para su protección por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III. Por normas generales, actos u omisiones de las autoridades de los Estados o del Distrito Federal, que invadan la esfera de competencia de la autoridad federal, siempre y cuando se violen los derechos humanos reconocidos y las garantías otorgados por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출처: 멕시코 하원 홈페이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LAmp_150618.pdf

7) 동법에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은 공권력을 가진 당국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에 따라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과 같은 동등한 행위를 하는 주체를 지칭한다.

8) El amparo protege a las personas frente a normas generales, actos u omisiones por parte de los

헌법 제107조는 헌법 제103조에서 명시하는 분쟁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세부 조항을 통해 암파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 상황, 한계,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9] 주요한 몇몇 조항을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항에서는 암파로의 근본적인 개념과 그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암파로 재판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이나 피해자 집단(agraviado), 권리 당사자이거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가진 사람이, 법적 명령에 맞서는 특수한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법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관련해 분쟁으로 제기된 행위가 멕시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법, 행정 또는 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청구는 주관적 권리를 가지는 자가 할 수 있고 그의 권리에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10] 두 번째 조항에서는 암파로 재판이 암파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제기한 사람이 신청한 것만 심리해 보호한다고 명시한다.[11] 멕시코에서의 암파로에 대한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한편, 헌법 제107조 세 번째 항은 사법, 행정, 노동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암파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최종 판결, 중재, 결정, 위반이 있는 절차 과정 중에서 원고의 방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인 이상의

---

poderes públicos o de particulares en los casos señalados en la presente Ley.
출처: 멕시코 하원 홈페이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LAmp_150618.pdf

9) Artículo 107. Las controversias de que habla el artículo 103 de esta Constitución, con excepción de aquellas en materia electoral, se sujetarán a los procedimientos que determine la ley reglamentaria, de acuerdo con las bases siguientes: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10) I. El juicio de amparo se seguirá siempre a instancia de parte agraviada, teniendo tal carácter quien aduce ser titular de un derecho o de un interés legítimo individual o colectivo, siempre que alegue que el acto reclamado viola los derechos reconocidos por esta Constitución y con ello se afecte su esfera jurídica, ya sea de manera directa o en virtud de su especial situación frente al orden jurídico.
Tratándose de actos o resoluciones provenientes de tribunales judiciales, administrativos o del trabajo, el quejoso deberá aducir ser titular de un derecho subjetivo que se afecte de manera personal y directa;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11) II. Las sentencias que se pronuncien en los juicios de amparo sólo se ocuparán de los quejosos que lo hubieren solicitado, limitándose a ampararlos y protegerlos, si procediere, en el caso especial sobre el que verse la demanda.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법관으로 구성된 순회재판소는 절차상의 위반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12)]

B) 재판 외 또는 이미 결론이 나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소진하여, 재판에서 집행을 통해 배상이 불가능한 행위에 대하여[13)],

C) 재판에서 타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14)]도 암파로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조 네 번째 항에 따르면, 행정사건에서 암파로는 사법, 행정, 노동법원이 아닌 당국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적 방어 수단에 의해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때에 청구된다. 다만, 제기된 행위가 헌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다.[15)]

---

12) III. Cuando se reclamen actos de tribunales judiciales, administrativos o del trabajo, el amparo sólo procederá en los casos siguientes:

A) Contra sentencias definitivas, laudos y resoluciones que pongan fin al juicio, ya sea que la violación se cometa en ellos o que, cometida durante el procedimiento, afecte las defensas del quejoso trascendiendo al resultado del fallo. En relación con el amparo al que se refiere este inciso y la fracción V de este artículo, el 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 deberá decidir respecto de todas las violaciones procesales que se hicieron valer y aquéllas que, cuando proceda, advierta en suplencia de la queja, y fijará los términos precisos en que deberá pronunciarse la nueva resolución. Si las violaciones procesales no se invocaron en un primer amparo, ni el Tribunal Colegiado correspondiente las hizo valer de oficio en los casos en que proceda la suplencia de la queja, no podrán ser materia de concepto de violación, ni de estudio oficioso en juicio de amparo posterior.

La parte que haya obtenido sentencia favorable y la que tenga interés jurídico en que subsista el acto reclamado, podrá presentar amparo en forma adhesiva al que promueva cualquiera de las partes que intervinieron en el juicio del que emana el acto reclamado. La ley determinará la forma y términos en que deberá promoverse.

Para la procedencia del juicio deberán agotarse previamente los recursos ordinarios que se establezcan en la ley de la materia, por virtud de los cuales aquellas sentencias definitivas, laudos y resoluciones puedan ser modificados o revocados, salvo el caso en que la ley permita la renuncia de los recursos.

Al reclamarse la sentencia definitiva, laudo o resolución que ponga fin al juicio, deberán hacerse valer las violaciones a las leyes del procedimiento, siempre y cuando el quejoso las haya impugnado durante la tramitación del juicio mediante el recurso o medio de defensa que, en su caso, señale la ley ordinaria respectiva. Este requisito no será exigible en amparos contra actos que afecten derechos de menores o incapaces, al estado civil, o al orden o estabilidad de la familia, ni en los de naturaleza penal promovidos por el sentenciado;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13) B) Contra actos en juicio cuya ejecución sea de imposible reparación, fuera de juicio o después de concluido, una vez agotados los recursos que en su caso procedan, y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14) C) Contra actos que afecten a personas extrañas al juicio: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15) IV. En materia administrativa el amparo procede, además contra actos u omisiones que provengan de autoridades distintas de los tribunales judiciales, administrativos o del trabajo, y que causen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암파로는 간접인지 직접인지와는 별개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야기한 혹은 집행한 공권력을 상대로(집행자가 개인일 수 있으나 공공집단에 소속된 공권력을 집행하는 자로) 개인 혹은 단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본인의 권리 침해 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 소원과 유사한 형태로, 그 근본적인 목적과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암파로는 멕시코 국민들이 본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3. 암파로의 유형

그렇다면 암파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암파로는 직접 암파로(Amparo Directo)와 간접 암파로(Amparo Indirecto)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직접 암파로는 순회재판소(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16]에 소를 제기한다.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대상으로도 제기가 가능해, 올바르고 공정한 법적 절차나 과정을 거친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간접 암파로는 지방법원 판사(Jueces de Distrito) 관할로, 공권력의 처분, 절차 및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간접 암파로는 당국이나 공공기관이 행한 어떤 행위나 절차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절차가 법, 규칙, 명령 등을 위반했거나 그 실현 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

---

agravio no reparable mediante algún medio de defensa legal. Será necesario agotar estos medios de defensa siempre que conforme a las mismas leyes se suspendan los efectos de dichos actos de oficio o mediante la interposición del juicio, recurso o medio de defensa legal que haga valer el agraviado, con los mismos alcances que los que prevé la ley reglamentaria y sin exigir mayores requisitos que los que la misma consigna para conceder la suspensión definitiva, ni plazo mayor que el que establece para el otorgamiento de la suspensión provisional, independientemente de que el acto en sí mismo considerado sea o no susceptible de ser suspendido de acuerdo con dicha ley.

No existe obligación de agotar tales recursos o medios de defensa si el acto reclamado carece de fundamentación o cuando sólo se aleguen violaciones directas a esta Constitución;

출처: 멕시코 합중국 헌법,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_090819.pdf

16) (연방)순회재판소(Tribunal Colegiado Federal)는 직접 암파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다. 연방 단위의 재판소로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출처: 멕시코 하원 홈페이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72_010519.pdf

차생략한 것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암파로는 어떠한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판결을 받는다고 본다면, 간접 암파로는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생략된 절차로 인해 하급법원이 판결을 다시 내리도록 한다. 그 결과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결을 일부 인용 혹은 전체 인용하여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직접 암파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암파로법(Ley de Amparo) 제83조 5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상고가 불가능하다. 간접 암파로의 결과에 대해서는 순회재판소에 항소 혹은 경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

4. 암파로 사례

다음은 암파로의 정의와 규정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있었던 암파로 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암파로를 제기하는 주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또는 단체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이나 본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이 직접 암파로를 신청하게 된다.

2017년 7월 23일자 엘 파이스(El País) 신문은 전 베라크루즈(Veracruz)주 주지사인 하비에르 두아르테 데 오초아(Javier Duarte de Ochoa)가 멕시코시티 지방법원(Juzgados de Distrito) 17부[17]에서 약 82개의 증거를 인정받아 돈세탁과 조직 범죄(Delincuencia organizada)에 가담한 죄로 재판정에 설 것이라고 보도했다.[18] 이후, 하비에르 두아르테는 조직 범죄 관련 혐의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재화 운영(16억 7천만 페소, 한화 1,064억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8년 10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더하여 40여 채의 부동산과 캄페체(Campeche)주의 20 구획의 토지와 부동산을 몰수당했

17) 지방법원(주 법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Juzgados de Distrito)은 민사, 형사 혹은 행정재판이 연방법이나 국제조약 적용이 필요한 재판의 경우에 해당된다.
출처: 멕시코 하원 홈페이지,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pdf/172_010519.pdf

18) 출처: 신문 엘 파이스(El País), 2017년 7월 23일자,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7/07/22/mexico/1500750776_982818.html

다. 또한 최저일당 99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고 현재 북쪽감옥(Reclusorio Norte)에 수감된 상태다. 이에 하비에르 두아르테는 본인이 선고받은 형과 본인의 모든 자산 압수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순회재판소에 직접 암파로를 제기하였다.

순회재판소는 하비에르 두아르테가 본인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련하여 어떤 법적 편견이나 손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비에르 두아르테의 항소를 거부한 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19] 순회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한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과연 지방법원이 하비에르 두아르테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려하고도 암파로를 인용하여 그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사건은 이미 선고 받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직접 암파로 사건의 예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간접 암파로 사건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 전 이달고(Hidalgo) 시마판(Zimapán) 시의 공공안전부 부장이었던 구스타보 T.T(Gustavo T.T)는 조각난 시신으로 발견된 한 피해자의 납치와 관련된 범죄로 2019년 10월 28일 체포되었다. 그는 본인의 체포 과정이 위헌이라며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시마판 시 상급법원인 이달고 주 법원으로 간접 암파로를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멕시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14조 신체의 자유와 제16조 개인정보와 체포 과정에서 보장되었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불법 체포였다는 것이다. 이달고 주 법원은 비록 청구인이 범죄에 관련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규정된 형법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해당 당국의 체포는 위헌이라고 설명하면서, 10,000페소의 보석금과 함께 구금의 임시 중지 판결을 내렸다.[20] 이 경우, 간접 암파로의 결과인 임시 구금 중지 판결을 청구인이 무죄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이처럼 간접 암파로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나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집행 절차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위반한 경우 절차상

19) 출처: 밀레니오 2019년 11월 15일자 기사,
https://www.milenio.com/policia/javier-duarte-obtener-amparo-sentencia-9-anos
20) 출처: 이달고 2019년 10월 30일자 기사,
https://hidalgo.lasillarota.com/exjefe-policia-zimapan-amparo-30-octubre/340417

의 문제를 이유로 삼게 되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시마판 사건은 양모씨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양모씨 역시 멕시코 검찰의 체포와 조사 과정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본인의 인권이 침해 당했고, 적절한 영사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관할권을 지닌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의 상급법원인 순회재판소에 간접 암파로를 제기했고, 긴 소송 끝에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받아 상급법원에서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으로 석방 인용 명령을 내려 석방되었다. 외국인인 양씨도 개인의 권리 침해 구제 절차를 통해 본인의 인권을 보장받은 것이다.

5. 결론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암파로 제도는 멕시코의 아주 특징적인 법적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이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부패한 공권력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돈과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권력 당국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간접 암파로의 사례처럼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기도 전에 절차상의 하자나 생략을 문제 삼아 피고인이 석방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은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멕시코 국립 자치대(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의 학자이자 연방사법부(Judicatura Federal)의 고문인 알폰소 페레즈 다사(Alfonso Pérez Daza)는 2019년 10월 9일 멕시코 신문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에 기고한 논설에서 “멕시코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도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암파로 제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불행하게도 현재

이 암파로 제도가 무책임하게 남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21]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또 한 국가의 사법 체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암파로는 분명히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도구인 암파로 제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1) 출처: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 2019년 10월 9일자 논설,
https://www.eluniversal.com.mx/opinion/alfonso-perez-daza/el-abuso-del-juicio-de-amparo